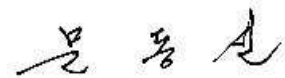


군산시 조례재의요구및제소에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2년 11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295호

군산시 조례재의요구및제소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107조 및 제172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및 제소시 그 담당부서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의요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라 함은 시 본청의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사업소를 말한다.
2. “법제부서”라 함은 조례안을 심사·공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조례안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하며, 현행 자치법규집의 목차분류에 따른다.
4. “복합조례안”이라 함은 여러 부서의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을 말한다.

제4조(재의 및 제소부서 지정) ①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복합조례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해서도 소관부서가 명백하지 아니한 조례는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재의요령 및 절차) ① 법제부서는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어 온 조례안중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수정의결된 집행부 발의 조례안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 당해 조례안을 통보하여 공포 여부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례안을 통보받은 소관부서는 당해 조례안이 제2조의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당해 조례안의 원안 공포나 재의요구 여부를 3일 이내에 법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2항에 의해 재의요구의견을 법제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의견 통보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심사를 받은 후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법제부서에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의뢰를 하여야 한다.

④ 법제부서는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안의 심의회 상정의뢰를 받은 경우 소관부서에 심의회 일정 등을 통보하고, 소관부서의 관·과·소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재의요구이유를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⑤ 심의회에서 재의요구 결정을 한 경우, 소관부서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에 재의요구안 시의회 제출의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의요구안 본회의 제안설명)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시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의 제안설명자는 소관 국·소장이 된다.

제7조(재의결과 보고)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재의결하였을 때에는 법제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소) ① 시장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제소요령 및 절차) ①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이 집행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부서는 제소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에는 법제부서의 협조를 받아 제소장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은 군산시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10조(제소 보고) 재의결과에 불복하여 제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제소사항 및 제소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의요구지시) 도지사의 재의요구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조례(중일부개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군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 ○국·소 장

지난 ○○년 ○월 ○일 군산시의회 제 ○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년 ○월 ○일 이송되어 온 “군산시○○○조례(중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07조·제172조)에 의거 재의요구합니다.

[이 유]

1. -----은 ○ ○ ○법에 위배

○

2. -----은 ○ ○ ○법에 위배

○

※ 조례안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조례 재 의 요구 사항 보고			
군 산 시			
조례명			
종 류	제정(), 개정(), 폐지()		
제안자	시장(), 의회의원()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심의회(○년 ○월 ○일)		
의회의결일	년 월 일	이송일	년 월 일
재의요구지시여부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재 의 요구 일			
재 의 결 일			
문제규정			
재의요구사유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조례제소사항보고

군 산 시

조례명			
종 류	제정(), 개정(), 폐지()		
제안자	시장(), 의회의원()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심의회(○년 ○월 ○일)		
의회결의일	년 월 일	이송일	년 월 일
재의요구지시여부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재 의 요 구 일			
재 의 결 일			
제소 지시 여부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판 결 일			
제 소 일			
판 결 요 지			
비 고			

군산시 공고 제2012-2166호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각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조례에 대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관리 추진체계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 및 분야시설(안 제2조)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능(안 제3조)
 - ▶ 범위 :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지원과 소관 시설(별표 1)
 - ▶ 시설 : 4개 시설(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 위탁관리(안 제7조 ~ 제13조)
 - ▶ 사회복지 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 ▶ 수탁시 수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거쳐 선정 함
 - ▶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함
 - ▶ 시설의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450-4311, 팩스 450-649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
(전화 450-4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 및 분야별 개별법령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군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사회복지시설 운영

제3조(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사회복지시설 이용

제5조(이용대상) 이용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2. 노인종합복지관 :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단,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

제6조(이용료) 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 위탁관리

제7조(운영의 위탁 등)

-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
- ④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은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 ⑤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4년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⑥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 받아야 한다.

제13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호, 0000.00.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노숙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관련 시설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제3조 관련>

연번	관리부서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비고
1	주민생활 지원과	신애원	군산시 새터길 20 (구암동)	노숙인 보호 및 재활	
2		군산나운종합 사회복지관	군산시 백도로 117 (나운동, 주공5단지 아파트)	지역사회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3	복지지원과	군산장애인 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산북동)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 능력 개발 및 재활교육	
4		군산노인 종합복지관	군산시 둔배미길 29 (중앙동)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 과 복지증진	

[별표 2]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이용료 <제6조 관련>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 장애인	기타장애인	일 반 인	
물리치료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준함		무 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수가 및 약가		
직업훈련	1인/1개월		무 료	15,000원		
대강당	1일/1회		무 료	30,000원	50,000원	
수 영 장	성 인	1일	무 료		1,500원	
		1월	무 료		30,000원	
	학 생 (초, 중, 고)	1일	무 료		1,000원	
		1월	무 료		20,000원	
	유 아	1일	무 료		700원	
기타시설			무 료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이용료

서비스 내용		이 용 료
회원 가입		전회원 : 무료
회원증	회원증 발급	전회원 : 무료
	회원증 재발급	일 반 : 실비(1천원) 수급자 : 무료
이·미용 서비스(컷트)		전회원 무료
물리치료		일반 : 실비(1천원) 수급자 : 무료
전위 치료		전회원 무료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1학기/4개월 수강)		일 반 P/G : 5,000원 컴퓨터 P/G : 10,000원 수급자 : 무료
경로식당 식권 구입비 (토요일 : 1, 3주 운영)		일반 : 1,700원(1식) 수급자 : 무료

군산시 공고 제2012-2193호

「군산시 맛집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년 11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맛집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규정을 보완 보다 위생적이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맛집을 지정하고자 이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제정 내용

가. “군산맛집”의 용어 정의 내용변경(조례 안 제2조, 제4조, 제5조)

- 군산맛집 지정기준이 “맛”에 치중되어 위생·환경이 열악한 업소가 군산맛집에 선정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군산맛집”의 기본용어 정의를 변경

나. 기존 맛집의 재심사자 변경(조례 안 제7조제1항)

- 기존맛집의 재심사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나 맛에대한

전문성 결여로 전문가로 구성된 “군산맛집 발굴·육성위원회”로 변경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정비

(조례 안 제2조,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

- 기존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

3.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전화(063)450-4323 팩스(063)452-8165]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방문 ·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063-450-4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4조, 제5조 중 “맛,멋,모양”을 “맛,위생,서비스,환경”으로 한다.

제4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6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맛집에 대하여 맛집의”를 “맛집의”로 “관계공무원”을 “군산맛집발굴·육성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해당될 때에는”을 “해당 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해당업무”를 “해당 업무”로 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에 관하여 ~”를 “~에(삭제) ~”로 한다.

제13조 중 “잔여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회 회무를”을 “위원회의 사무를”으로 한다.

제1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를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군산맛집”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 중 <u>맛, 멋, 모양</u>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u>의하여</u>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u>의하여</u>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p>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 <u>맛, 위생, 서비스, 환경</u> ----- . ----- 따라 -----. 3. ----- 따라 -----.
<p>제4조(맛집의 육성) 시장은 <u>맛, 멋, 모양</u>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맛집 음식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u>강구</u>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맛집의 육성) ----- <u>맛, 위생, 서비스, 환경</u> ----- 마련-----.</p>

현행	개정안
<p>제5조(맛집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u>맛, 멋, 모양이</u>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2·3·4·5·6 (생략)</p> <p>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u>맛집에 대하여</u> <u>맛집의 질적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할수 있다.</u></p> <p>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u>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1·2·3 (생략)</p>	<p>제5조(맛집의 지정 등) ① ----- <u>맛, 위생, 서비스, 환경이</u> -----.</p> <p>② (생략)</p> <p>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① ----- ----- <u>각 호의</u> -----.</p> <p>1·2·3·4·5·6 (생략)</p> <p>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 --- <u>맛집의</u> ----- <u>제10조에서 정한 군산맛집발굴·육성위원회로</u> -----.</p> <p>② -----<u>각 호의</u> ---- <u>해당 될 때에는</u> -----.</p> <p>1·2·3 (생략)</p>

현행	개정안
<p>제8조(지위의 승계)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 합병에 의하여 -----.</p>	<p>제8조(지위의 승계) ----- -----에 따라 -----.</p>
<p>제9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p>	<p>제9조(포상) -----개인에게----- -----.</p>
<p>제12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당연직으로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국장 및 과장) 2. (생략) 3. (생략) 4. 그 밖에 <u>맛집에 관하여</u>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제12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 해당 업무-----. 2. (생략) 3. (생략) 4. ----- <u>맛집에</u> -----.</p>
<p>제13조(임기) -----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13조(임기) ----- 남은기간으로 한다.</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의 사무를 -----. ② (생략)</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p>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p>

군산시 공고 제2012-2203호

「군산시 맛집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년 11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맛집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제정 내용

가. 관련단체 명칭 변경 (시행규칙 안 제2조 제2항 제2호)

- 위생관련단체의 법인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변경

나. 시장이 인정한 맛집 신청의 경우 문안 수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 맛집 신청시 설문조사후 시장이 인정하는 업소를 시장이 위원회에 추천하는 걸로 문안 수정

다. 현지심사평가표 변경 (시행규칙 제2조제6항)

- 맛집 선정 현지심사표 별표2를 위생·환경부문 배점 비율을 상향조정 변경 (붙임1, 붙임2 참조)

라. 시행규칙 제3조의 명칭변경 및 신청자격 년한 조정 (시행규칙 제3조)

- 제3조의 내용과 명칭이 부적절하여 적절한 용어로 변경 하였으며, 신청자격을 개업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 변경

마. 조례 제7조 개정내용과 관련 재심사자 변경 (시행규칙안 제4조제1항)

- 제7조의 개정안에 맞춰 관계공무원을 군산맛집 발굴·육성 위원회로 변경

바. 재심사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 (시행규칙안 제4조제2항)

- 재심사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관계공무원 현지평가에 의하여 재지정 하던 것을 현지평가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

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정비

(시행규칙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 기존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전화(063)450-4323 팩스(063)452-8165]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063-450-4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한국음식업중앙회”를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시장이 인정하는 업소”를 “시장에게 추천받은 업소”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별표2를 “붙임1”에서 “붙임2”로 한다.

제3조 중 “1년”을 “3년”으로 “~일로부터”를 “~한 날로부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관계공무원”을 “군산맛집 발굴·육성 위원회”로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한다.

제4조제2항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제2조제5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를 “심사후 제2조제5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당하는”를 “해당 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당초”를 “맨처음”으로 한다.

제8조 중 “오인”을 “잘못 인식”으로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에 의하여 -----.</p> <p>② ----- 해당하는 -----.</p> <p>1. (생 략)</p> <p>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u>한국음식업중앙회 군산지회에서 추천한 업소</u></p> <p>3. <u>기타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소</u></p> <p>③ -----에 의하여 -----.</p> <p>④ -----에 의한 -----.</p> <p>⑤ ----- 교부 -----.</p> <p>⑥·⑦ (생 략)</p>	<p>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에 따라 -----.</p> <p>② ----- 해당 하는 -----.</p> <p>1. (생 략)</p> <p>2. ----- <u>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에서 -----.</u></p> <p>3. <u>그 밖에 ----- 시장에게 추천받은 업소</u></p> <p>③ -----에 따라 -----.</p> <p>④ -----에 따른 -----.</p> <p>⑤ ----- 발급 -----.</p> <p>⑥·⑦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정시기) <u>맛집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개업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u> ----- <u>취소일로부터 -----.</u></p>	<p>제3조(지정자격) ----- ----- <u>3년이-----.</u> 다만 ----- ----- <u>한 날로부터 -----.</u></p>
<p>제4조(지정의 재심사) ① 시장은 조 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u>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는 <u>별표2의 현지평가표에 의하여 제2조제5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u></p> <p>③ (생 략)</p>	<p>제4조(지정의 재심사) ① ----- 규정에 따라 ----- <u>위원회 위원들로 ----- 적합 여부 -----.</u></p> <p>② -----에 따라 <u>심사후 제2조 제5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③ (생 략)</p>

현행	개정안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①----- 해당하는 -----. ② (생략)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①----- 해당하는 -----. ② (생략)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 - --- 당초 -----.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 - --- 맨처음 -----.
제8조(표시의 제한) ----- -- ---- 오인 ----- 하여서는 -----.	제8조(표시의 제한) ----- -- ---- 잘못 인식 ----- 해서는 -----.

【붙임 1】

[별표 2]

『군산 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

업소현황

상 호		주메뉴		대표자	
소재지				전 화	

평가표

구 분	항 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총 점	
	배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조리 부분 (70)	맛(50)	주 메뉴의 모양 및 맛 (40)	40	39	37	36	34	33	31	30	
		부·후식의 모양 및 맛 (10)	5	4	3	2					
		주 부식 차림의 조화 (10)	5	4	3	2					
	조리기술 (20)	재료의 특성과 조화 (10)	10	9	8	7	6	5	4	3	
		이용객의 호응도(대중성) (10)	10	9	8	7	6	5	4	3	
환경 및 접객 부분 (30)	영업환경 (20)	내외부 환경 및 주방 청결도 (5)	10	9	8	7	6	5	4	3	
		접근성 및 편의시설 등 (5)	10	9	8	7	6	5	4	3	
	접객마인드 (10)	손님응대 친절도 (10)	10	9	8	7	6	5	4	3	

평가자 의견

【붙임 2】

[별표 2]

『군산 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

업소현황 (현행과 같음)

평가표

구 분	항 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총 점					
	배 점		탁월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음식 및 위생부분 (55)	음식 (30점)	음식의 맛 (20)	20	17	15	13	10	7	5	3	1		
		독창적 메뉴 (5)	5	4	3	2	1						
		가격의 적정성 (5)	5	4	3	2	1						
	위생 (25)	주방 위생 (10)	10	9	8	7	6	5	4	3	2	1	
		음식청결 (5)	5	4	3	2	1						
		화장실 위생 (5)	5	4	3	2	1						
		내·외부 청결 (5)	5	4	3	2	1						
서비스 및 전통성 부분(25)	서비스 (15)	종사자 친절도 (10)	10	9	8	7	6	5	4	3	2	1	
		종사자 외모, 복장 등 (5)	5	4	3	2	1						
	전통성 (10)	업소의 역사성 (10)	10 (30년이상) 7 (29~20년) 5 (19~10년) 3 (10년미만)										
시설 및 환경부분 (20)	시설 (10)	시설의 편의성 (5)	5	4	3	2	1						
		조명,온도상태 (3)	3	2	1								
		실내 쾌적도 (2)	2	1	0								
	접근성 (10)	주차 편의성 (5)	5	4	3	2	1						
		접근 용의성 (5)	5	4	3	2	1						

평가자 의견 (현행과 같음)

[법무계/법무계장/이석기]: 법무계 심사완료 제 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통계청)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통계청)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1월 2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수송동 792-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통계청)
 - 2) 명 칭 :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토지면적 : 1,624㎡
 - 2) 건축면적 : 539.17㎡(연면적 : 1,430.48㎡ / 1동, 지상 3층)
4.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호남지방통계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11. ~ 201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내용	
1	수송동	792-7	대지	1,624	1,624	통계청				
	합계		1필지		1,624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13호 외1개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1월 9일

-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개정동 529-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13호 외1개노선)사업
 - 나. 명 칭 : 개정 안금동마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 선 명	결정조서		금회 실시계획인가			미개설		비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폭원(m)	연장(m)	
도	소로2-313	8.0	447	8.0	184	1,598	8	263	
로	소로2-308	8.0	580	8.0	126	1,252	8	454	
계			1,027		310	2,850		717	

-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11 ~ 2014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 생략
-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도시계획 도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529-1	전	3,111	998	고영곤	군산시 개정동 655-2	군산원예 농협협동 조합	지상권, 근저당	
2	532-12	전	1,841	98	김진순외1인	군산시 개정동 507-81			
3	532-21	전	86	19	오익상	군산시 개정동 531			
4	532-11	도	63	9	오익상	군산시 개정동 531			
5	532-22	도	76	26	오익상	군산시 개정동 531			
6	681	도	1,236	14	국(농수산부)				
7	654	전	1,015	96	고오랑외2인	광양시 금호동목련빌라26/104호			
8	530	전	536	158	최은숙	군산시 사정동 금호타운@105/404호			
9	653	전	377	164	최은숙	군산시 사정동 금호타운@105/404호			
10	652	대	207	34	고영곤	군산시 개정동 655-2			
11	산3-1	임	1,190	88	오준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무궁화@501/204호			
12	532-26	전	1,038	298	조용례	군산시 개정동 532-9			
13	532-25	대	225	74	고공영	군산시 개정동 532-7			
14	532-7	전	370	351	고공영	군산시 개정동 532-7	군산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당	
15	532-8	전	116	20	조용례	군산시 개정동 532-9			
16	534-1	전	552	49	조용례	군산시 개정동 532-9			
17	537-1	전	549	41	고균철	군산시 조촌동 세풍사원@ 가/206호			
18	540-9	전	757	94	오병제	군산시 개정동 531	군산농업 협동조합	지상권, 근저당	
19	538-1	전	731	144	왕정년	군산시 미룡동 주공@ 108/805호			
20	540-10	전	264	75	박영서	군산시 개정동 585-10			
	합계	20필	14,340	2,850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1. 15. ~ 11. 29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33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1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3건

종전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관련지번 변경 : 8건

도로명주소	변경된 지번주소	종전 지번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2-128호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의거 군산 발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군 산 시 장

1. 권역현황

- 사업명 : 군산 발산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 목적 : 해당권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위치 :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일원(1개 법정리 4개 행정마을)
- 면적 : 64ha
- 인구 : 231가구 519명(남 274, 여 269)
- 지역자원
 - 권역내 : 최호장군유지, 발산리석등, 시마타니금고, 월령공방, 도예공방, 대방산, 진남정 국궁활터 등
 - 권역외 : 새만금, 금강 철새도래지, 간치말권역 등

2. 추진경위

- 대상지 권역 확정 : 2011. 11. 5
- 기본계획수립 : 2012. 3. 27 ~2012. 7. 31
- 기본계획승인 : 2012 11. 12
- 시행계획수립 : 2012. 12. ~ 2013. 5.
- 사업기간 : 2012. ~ 2016 (5년)

3. 주요사업 및 투자계획

구 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연도별사업비(백만원)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 계			4,155 (22)	498	1,302 (2)	1,131 (20)	823	401
기초 생활	소 계		2,472	252	756	818	502	144
	전통문화센터	198m ²	450				450	
	공방쉼터	165m ²	52				52	
	마을회관	99m ²	250		250			
	소공원	222m ²	144					144
	권역센터	364m ²	1,276	252	206	818		
	체육공원	3,300m ²	300		300			
소득 증대	소 계		80 (20)			80 (20)		
	초마실지원사업	1식	8 (20)	0		80 (20)		
지역 경관 개선	소 계		608 (2)		308 (2)		150	150
	간판정비	5식	8 (2)		8 (2)			
	마을안길정비	1,300m	300		300			
	안내판개선	27식	150					150
	대방산 둘레길	1,500m	150				150	
지역 역량	소 계		420	42	108	137	82	51
	교육		129	19	31	34	30	15
	컨설팅		42		14	28		
	홍보·마케팅		112		19	52	29	12
	정보화구축		40	20	20			
	마을경영지원		97	3	24	23	23	24
제경비	소 계		423	172	100	66	59	26
	설계비		172	172				
	공사관리비		209		83	55	49	22
	사업관리비		42		17	11	10	4
예비비	총사업비의10%이내		152	32	30	30	30	30

○ 부문별투자계획

1. 전통문화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능 별	기초생활기반확충
기능 및 역할	체험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쉼터, 최호장군 추모제 등 최호장군유지를 중심으로 한 다목적 기능 수행
사 업 위 치	개정면 발산리 439-1
사 업 규 모	체험실, 휴게실, 관리실, 화장실, 조경사업 / 건축 198㎡
도 입 기 능	관광객쉼터, 체험프로그램
총 사 업 비	450백만원
검토자 의견	권역의 가장 큰 자원으로 판단되는 최호장군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유치,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의 다각적인 활성화 필요

2. 공방쉼터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능 별	기초생활기반확충
기능 및 역할	최호장군 유지 입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 조성
사 업 위 치	개정면 발산리 396-1
사 업 규 모	쉼터조성 165㎡
도 입 시 설	돌벤치, 돌의자, 조경 등
총 사 업 비	52백만원
검토자 의견	대상부지는 개인소유로 동의서 및 시설물에 대한 지상권설정이 잘 진행되도록 이행

3. 마을회관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능 별	기초생활기반확충
기능 및 역할	마을휴식공간 확보 및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사 업 위 치	개정면 발산리 329-3 외
사 업 규 모	마을회관 99㎡
도 입 시 설	회의실, 주방, 주차장 등
총 사 업 비	250백만원
검토자 의견	대상부지는 원발산 소유로 향후 마을회관이 선량하고 문제없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이행

4. 소공원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능 별	기초생활기반확충
기능 및 역할	지역주민 쉼터 및 건강증진 공간 도입
사 업 위 치	개정면 발산리 74-3
사 업 규 모	소공원 222㎡
도 입 기 능	모정, 체육시설, 벤치, 조경 등
총 사 업 비	144백만원
검토자 의견	시설물이 선량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이행하고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5. 권역센터 및 체육공원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능 별	기초생활기반확충
기능 및 역할	권역의 중심이 되는 건축물로써 지역주민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며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활용
사 업 위 치	개정면 발산리 276-4 외
사 업 규 모	건축 364㎡
도 입 시 설	회의실, 축구장, 태양광, 주차장, 조경 등
총 사 업 비	1,576백만원
검토자 의견	권역의 중심시설로서 시설물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행

6. 초마실 지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능 별	소득증대
기능 및 역할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마실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 기여
사 업 위 치	개정면 발산리 279-3
사 업 규 모	발효탱크 1식
도 입 시 설	초마실 발효탱크
총 사 업 비	80백만원(자부담 : 20백만원)
검토자 의견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시행계획 수립 시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법인구성, 토지 및 주민 자부담금을 확보한 후 이행

7. 간판정비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능 별	경관개선
기능 및 역할	권역상가의 노후된 간판을 특색 있는 간판으로 교체함으로 상가활성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사 업 위 치	개정면 일원
사 업 규 모	간판 5식
도 입 시 설	스토리텔링 간판
총 사 업 비	8백만원(자부담 2백만원)
검토자 의견	지역상가의 노후된 이미지를 개선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시켜나가야 함

8. 마을안길정비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능 별	경관개선
기능 및 역할	돌담정비 및 아스콘포장을 통한 권역의 주요도로 환경개선
사 업 위 치	개정면 일원
사 업 규 모	개정면사무소 ~ 대방마을 ~ 최호장군유지 / 1.3km
도 입 시 설	담장정비, 도로정비 등
총 사 업 비	300백만원
검토자 의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적인 정비 사업에 한함

9. 마을안내판개선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능 별	경관개선
기능 및 역할	발산권역 관광객들에게 낮은 권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통일된 입간판 부착으로 특색있는 경관형성
사 업 위 치	권역 초입, 각 마을 입구, 주요시설물 등
도 입 시 설	권역중합안내판, 마을안내판, 시설별안내판, 입간판 등
총 사 업 비	150백만원
검토자 의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외부방문객들이 쉽고 특색 있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설치

10. 대방산 둘레길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능 별	경관개선
기능 및 역할	오줌바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산책로역할 및 군산구불길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
사 업 위 치	대방산 일대
도 입 시 설	안내판, 벤치, 전망대 등
총 사 업 비	150백만원
검토자 의견	지역주민의 활용을 높이고 구불길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객유입에 노력이 필요함

11. 지역역량강화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년 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 계	420,000	42,396	107,806	136,658	82,313	50,827
마을 리더교육	24,426	1,523	7,493	7,917	5,970	1,523
마을주민교육	35,866	-	8,298	10,972	8,298	8,298
선진지 견학	68,658	17,329	15,241	15,241	15,241	5,606
컨설팅	42,066		14,022	28,044		
홍보.마케팅	111,748		19,260	51,084	29,404	12,000
정보화 구축	40,092	20,000	20,092			
마을 경영 지원	97,144	3,544	23,400	23,400	23,400	23,400
검토자 의견	주로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사업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권역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행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1월 2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경암동 61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시외버스정류장)
 -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7,923.6㎡
 - 나. 규 모 : 건축면적 957.17㎡ 건축연면적 1,200.47㎡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의 주 소 : 군산시 경암동 614-2번지
 - 나. 사업시행자의 성 명 : (주)군산공용버스정류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2. 8. ~ 2012. 10. 25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11월 2일

1. 공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6-4번지 외 53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사업
 - 2) 명 칭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 선 명	시설결정		기 개설		금회 실시계획인가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도로	대로2-11	30~33	990	30	344	3	75	193	확폭
	중로2-28	15~18	764	-	-	15~18	133.5	2,114	개설
	중로3-64	12~13	194	10	194	2~3	194	580	확폭
	소로2-60 3	8	194	7.5~8	194	0~0.5	30	55	확폭
공원	어린이공원 (제60공원)	1,560m ²		-		1,560m ²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수송동 852-2번지 청담빌딩 4층
 - 2) 사업시행자 성명 : 지곡동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대표 이용훈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10. ~ 2014. 05.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공고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동법 제15조 제1항 2호에 해당되어 등록말소하고, 동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11.

군 산 시 장

1.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자 : 이우창
2. 등록말소일 : 2012. 11. 7
3. 등록말소 사유 :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4. 처분 근거 : 임대주택법 제15조
5. 공고 내용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2012-군산시-임대사업자-67 (2012.10.19)
성 명	이 우 창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군산미룡1주공아파트
임대주택 소재지 (등록취소함)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405-16 1동 1002호, 1107호, 905호, 904호, 903호, 902호, 1410호, 802호, 606호, 207호, 204호, 203호, 1310호, 1309호, 1308호, 1307호, 104호, 103호 (18세대)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 주택행정계(☎ 063-450-4471)로 문의바랍니다.